채용시험 및 배점기준

1. 서류심사

구 분	합계	성적 및 교육사항	자격증	자기소개서	우대 및 가점
청년인턴	100	30	10	6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2. 면접시험

구 분	합계	전문성/역량	인성/태도	우대 및 가점
점 수	100	50	1 50	장애인 : 5점 취업지원대상 : 5-10점

3. 자격 종류별 서류전형 배점표(공통)

구 분	일 반 자 격	배 점
공통 자격	한국어능력시험(KBS),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	1급 : 3점 2급 : 2점 3급 : 1점
직무 자격	정보처리/워드프로세서/세무회계/자동차검사/자동차정비 /건설기계정비/건설기계설비/농업기계/컴퓨터활용능력	기사 : 3점 산업기사 : 1점 1급 : 2점 2급 : 1점

- ※ 응시 자격기준으로 명시된 자격은 점수 제외, 동일 자격 중복소지자는 상위 자격 1개만 인정
- ※ 자격 등급을 필수로 기재하고, 미기재시 최하점수 부여(워드프로세스 단일등급의 경우 1급 적용)

4. 자기소개서 채점기준

평가기준	배점 -		채 점 기 준				
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	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직무 수행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식구 구앵글 위안 사기개월 도덕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어려움 극복과 성과 도출 경험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이어움 그목과 정과 도울 경험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공단 지원 동기와 비전	성과도출	(10)	10	8	6	4	2점
중단 시천 공기와 미선	자기주도	(10)	10	8	6	4	2점

5. 성적 및 교육사항 반영기준

구분	점수 부여 기준	비고			
학교교육 직무 관련 전공과목 이수학점 당 2점		사외교육은 수료증 발급 교육에 한함			
사외교육	직무 관련 교육 10시간 당 1점				

※ 사외교육 수료증은 면접 시 확인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<원본일 경우 신청가능>

접수번호			접수일자				
청구인	성명		수험번호				
주 소							
반환장소							
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					
반환청구서류							
「채용절차의 공	공정화에 관한 법	률」 제11조 및 급	같은 법 시행령	제2조 및	제4조에	따라	위와 같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

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상 비위면직자등은

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

 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

 (채용, 공공근로)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 '	당도	l는	문항	- □어	체	크>
------	----	----	----	------	---	----

지원분야 :

1. <u>공직자</u>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
 ※ 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및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・임용・교육훈련・복무・보수・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「공직자윤리법」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
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<u>부패행위</u> 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중, 퇴직후 불문) ※ 부패행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※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→ <u>부패행위 비해당</u>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・여비 부당수령 → <u>부패행위 해당</u>
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 된 사실이 있는지 3-2. 현재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)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
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내 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 개정된 것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
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 해당 여부 해당 □
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 해당 여부 해당 □ 배당 □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(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)
년 월 일

지원자 성명 :

(서명)